

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교훈 : 성실  | <h1>가 정 통 신 문</h1> | 제 2022 - 151 호 |
| | <h2>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</h2> | 담당 : 안전자치부 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100 ☎ (교무실) 031-365-8200 ☎ (행정실) 031-365-8207 |

학부모님께,

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「도로교통법」이 일부개정되어 2021.5.13. 시행되었음에도, 개인형 이동장치(전동 킥보드 등)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.

개인형 이동장치(PM)도 법상 명백히 차(車)입니다. 특히, 청소년 학생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청소년도 교통단속 대상이 된다는 것과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.

따라서 학생들의 전동킥보드(전기 자전거, 전동이륜평행차 포함)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, 학생들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가정에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>

1. 가급적 사용 지양하되, 사용시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
 - 어린이(만13세 미만) 운행 적발시 보호자 처벌(과태료 10만원)
 - 무면허 운전 적발시 범칙금 10만원
2. 안전모(헬멧) 착용
 - 헬멧 미착용 적발시 범칙금 2만원
3.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
 - 2인 이상 탑승 적발시 범칙금 4만원
4. 교통신호 준수하고,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
 - 보도 주행 적발시 범칙금 3만원, 횡단보도 건널시 킥보드 내려서 걸어서 횡단

2022. 10. 17.

시 흥 가 온 중 학 교 장(직인 생략)